

한미약품 이사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독립이사, 기타비상무이사 등 비상근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독립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대행한다. 다만 이사회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 (종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는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의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일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하여 주주총회에 부의를 결정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3.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4. 이사의 보수
 15.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への 보고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공동대표의 결정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폐지 및 그 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6.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7.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재무 및 기타 사항을 결의한다. 다음의 재무기준은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1.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외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타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항
4. 신주의 발행
5.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의 위임
6. 전환사채의 발행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준비금의 자본전입
9.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
10.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11.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대여 또는 증권에 대여에 관한 사항
1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13.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 및 소각에 관한 사항
14. 이사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
15. 중요한 소송의 제기
16. 중요한 기술도입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17. 주식매수선택권의 일정범위 내에서의 부여 및 취소
18. 중요한 회계정책의 변경
19.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20. 단일 기부처당 연간 1억원 이상의 기부금품 집행에 관한 사항

21.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 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립이사 경과조치) 제4조 및 제5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